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6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회원제 등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통일함으로써 달성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성군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용어 현행화

나.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정합화 (안 제6조·제19조·제22조)

다.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자율성 명확화(안 제2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 제27조, 제44조 및 「작은 도서관진흥법」”을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주민”을 “주민”으로, **“하는「도서관법」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공립작은도서관 및 본 조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를 “법 제3조제2호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해당 작은도서관의”로, “지방자치단체,「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

인을” 을 “자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면서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제3호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

4.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및 작은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작은도서관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 놓아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함으로써, 지역” 을 “수행함으로써,”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주민” 을 각각 “주민”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지역주민” 을 “주민”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작은도서관진흥법」” 을 “작은도서관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 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을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립 작은도서관” 을 “사립작은도서관” 으로, “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등록 · 관리 한다” 를 “등록 · 관리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을 “미달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처분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을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에” 로, “본” 을 “이”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장 하며” 를 “관장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자는 원활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회원 및 자료대출)”을 “(작은도서관 회원제)”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작은도서관 회원제)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고, 등록한 회원에게 도서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제2호 중 “취한 자”를 “취한 사람”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 회원제 운영방식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일 경우에는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자가 정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공립작은도서관 및 본 조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 주민---------- ---------- ---------- ------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 ---------- ---------- --.
<신 설>	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
<신 설>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면서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호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이하 ” 자료 “라 한다)” 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2. ---------- 법 제3조제2호를 따른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 운영자 “라 한다)” 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 작은도서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해당 작은도서관의 ---------- 자를 ---------- ----------.
<신 설>	4.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및 작은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

1.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서관 자료는 1,000권(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추어 놓아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기능)** ---------- ---- 수행함으로써, ---------- ---------- -------. 1. (현행과 같음) 2. 주민---------- ------ 3. 주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6. ---------- 주민---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6조(설립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설립 및 위탁)** ① ------ 작은도서관법----------.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
제7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운영계획서 및 시설명세서	**제8조(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 사립작은도서관----------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관리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등록·관리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미달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 그 처분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 등) ① 군수로부터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지원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더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 충족 여부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제9조,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의 선정 및 지원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에---------- 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 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 관장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 사람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원활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만 도서 등의 자료를 대출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속 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한다.	**제19조(작은도서관 회원제)**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고, 등록한 회원에게 도서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입관의 제한)**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2. ----취한 사람---------- ---------- 있는 사람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 ---------- 사람
제22조(자료의 이관 등)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타 도서관에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준용)** 회원제 운영방식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일 경우에는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자가 정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도서관법(법률)」(2025.3.25. 일부개정, 2025.9.26.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 ·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 교양습득 · 학습활동 · 조사연구 · 평생학습 · 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 정리 ·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 · 열람 · 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 · 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 ·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 독서활동 ·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

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상호대차,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2025.1.31. 일부개정, 2025.8.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 · 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5.28. 타법개정·시행)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 · 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 · 시설 · 자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

1. 사서 요건
   나.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에 1명의 사서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2. 시설 요건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서관자료 요건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4. 위 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및 공립 어린이도서관등의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다.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라.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6. 타법개정, 2022.12.8. 시행)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시행규칙)」

(2024.10.30. 일부개정·시행)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까지 가능하며, 책이음회원은 다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대출가능권수를 30권까지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5일간 재대출이 불가능 하다.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받거나 해약 할 수 있다. 단, 연체중인자는 예약할 수 없다.